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단5287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한혜윤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85,922원 및 그 중 6,765,301원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0,598,5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B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10,598,50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9. 9.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4. 9. 2.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기한(기한이익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9. 12. 20.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0. D은행에게 20,061,2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1. 12. 6.까지 13,295,929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6,765,301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20. 1. 20.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그에 따라 계산된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일부 회수된 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420,621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 관련 임의경매사건의 경과

1) 피고 A은 2019. 9. 13. 지인인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9. 11. 4.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2019.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10. 26. 피고 B에게 32,125,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폐지결정

피고 A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6094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0. 4. 27.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9. 1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185,922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6,765,301원 + 확정지연손해금 2,420,621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6,765,3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2. 3.까지는 약정 이율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1.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9. 12. 4. 피고 A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개인회생개시절차신청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9. 12. 20. 피고 A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1.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이 2016. 12. 12.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시가는 145,000,000원인 점, 피고 A의 소극재산은 E에 대한 대출금채무 37,535,158원, F에 대한 전세반환금채무 80,000,000원을 비롯하여 피고 A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회생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합계 284,709,566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로서는 그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 B은, 피고 A의 재정 상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의의 항변을 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2. 9.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리금은 10,598,501원[= 9,185,922원 + 미회수 대위변제금 6,765,301원에 대한 2020. 1. 20.부터 2020. 12. 3.까지의 이자 589,653원(= 6,765,301원 × 10% × 319/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위 6,765,301원에 대한 2020. 12. 4.부터 2021. 12. 9.까지의 이자 822,926원(= 6,765,301원 × 12% × 371/366)]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배당받은 배당액 32,125,000원 중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액인 10,598,5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배당금 32,125,000원의 배당금 중 10,598,50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별지